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자연유보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변경 〉

■ 이재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2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연유보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변경	2
※ 참고자료	6
1.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 중 DMZ 관할권 관련 규정	6
2. 자연유보지역 개요	7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23일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무장지대(DMZ)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수십 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임. 현행법은 비무장지대에 대하여 향후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비무장지대는 현재 유엔군사령부의 실질적인 통제 하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완전한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이라는 현행 표현은 그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법적·행정적 적용 시점에 대한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향후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Ⅲ. 검토의견

1. 자연유보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 변경

개정안은 자연유보지역의 정의규정 중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에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13. ----- ----- ----- ----- ----- ----- ----- ----- -----19 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 -----.

현행	개정안
14. ~ 19. (생략)	14. ~ 19.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제1항1)에 따라서 규정된 지역으로,

군사적 목적에 의한 출입 및 이용 제한²⁾으로 특유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은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³⁾으로 정의하면서, 기후부장관으로 하여금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내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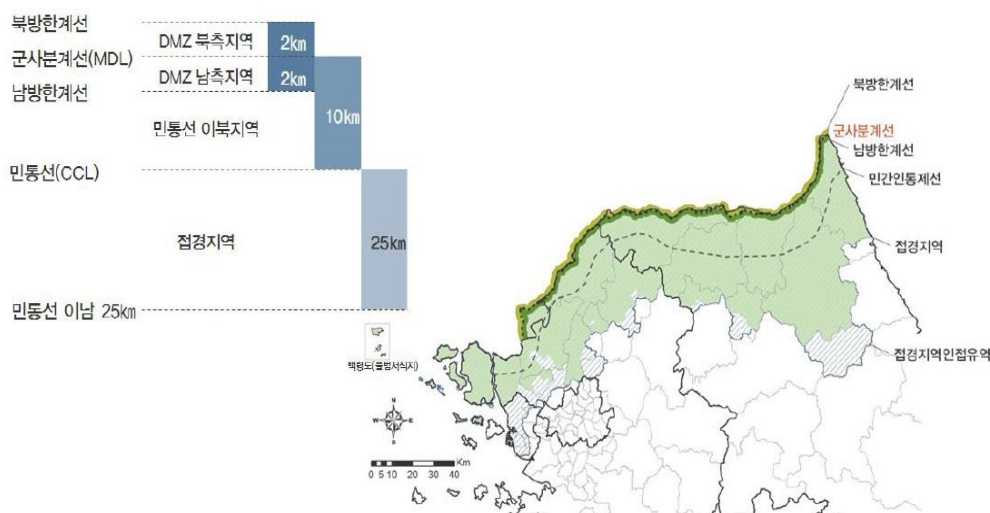
1)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킬로미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 2) 비무장지대(DMZ)는 현재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No.551-4에 의하여 군사정전위원회(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의 관할 하에 있어 DMZ로의 출입 및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사전허가 등이 필요함
<참고자료 1.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 중 DMZ관할권 관련 규정>
- 3) <참고자료 2. 자연유보지역 개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 범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자연유보지역 정의 중 비무장지대 부분이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로 규정되어 있어, 비무장지대에 대해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전혀 없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한 정의 중 비무장지대 부분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 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에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

제22조(자연유보지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협의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무장지대안에서 남·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통일정책관련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 법적·행정적 적용시점의 불명확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개정시 정전협정이 파기되거나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 비무장지대를 중립적인 제3기구에 위임하는 경우 등 비무장지대를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자연유보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41

※ 참고자료

1. 정전협정 및 유엔군사령부규정 중 DMZ 관할권 관련 규정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이하생략)

유엔군사령부규정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

(UNC Regulation 551-4 「COMPLIANCE WITH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3-6. 비무장지대/한강하구 출입(Access to the DMZ/HRE)

- a. 정전협정 제9항은 민사행정 관련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원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가 통제하는 남측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권한은 유엔사군정위 비서장에게 있다. 비서장은 일상적인 군정위 본부구역과 대성동 출입에 대한 승인 권한을 적절한 유엔사군정위 혹은 유엔사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참모장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유엔사군정위 비서처 작전 부비서장은 비무장지대 출입을 승인할 수 있고, 관리구역 통제장교들이 각자 담당하는 관리구역 출입을 적절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한다. (이하생략)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2. 자연유보지역 개요

□ 개념 및 도입연혁

- (개념)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무인도 또는 비무장지대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보지역으로 정의
 -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목적을 위하여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
 - ※ 비무장지대(DMZ)는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떨어진 군사적 완충지대
- (도입연혁) '97.8.28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98.1.1 시행
 - '97.7.4 자연환경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 ※ 개정 취지에 장차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정하여 동지역에 대한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

□ 현황

- 현재 자연유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음

□ 법적 의무 및 행위제한

-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기후부장관은 관계부처 및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종합계획 또는 방침을 수립하여야 함
- 자연유보지역의 행위제한 및 중지명령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준용
 - 다만, 남·북한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장관이 기후부장관과 협의한 통일정책관련사업은 준용 제외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